■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구분	명칭	제원 등	종별 내역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 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
부대시설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5톤 이상	3톤 이상	3톤 이상	5톤 이상	3톤 이상	2톤 이상	2톤 이상	1톤 이상	1톤 이상
	2. 트럭(이동정비용)	1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제외)	○	○	○	○	○	○	○	○	○
	3. 폐유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 포함	○	○	○	○	○	○	○	○	–
	4. 검차대 또는 리프트		○	○	○	○	○	○	–	–	–
정비기계류	1. 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 이상	○	○	–	○	–	–	–	–	–
	2. 트랙링크 용접기		○	○	–	○	–	–	–	–	–
	3. 롤러아이들러 프레스	100톤 이상	○	○	–	○	–	–	–	–	–
	4. 롤러아이들러 용접기		○	○	–	○	–	–	–	–	–
	5. 유압잭	이동식 10톤 이상	○	○	○	○	○	○	–	–	–
	6. 전기용접기	10KVA 이상(타워크레인은 3KVA 이하)	○	○	○	○	○	○	–	–	○
	7. 선반	1,000㎜ 이상	○	○	○	○	–	○	–	–	–
	8. 공기압축기	7㎏/㎠ 이상	○	○	○	○	○	○	–	–	○
	9. 부품세척기		○	○	○	○	○	○	○	○	○

	10.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11. 라인보링머신		–	–	–	–	–	–	○	–	–
	12. 유압베어링 풀러	10톤 이상	–	–	–	–	–	–	–	–	○
	13. 탁상드릴		–	–	–	–	–	–	–	–	○
	14. 탁상 그라인더(연마기)		–	–	–	–	–	–	–	–	○
	15. 터미널압착기		–	–	–	–	–	–	–	–	○
검사시험기	1. 전조등시험기		○	–	–	○	○	–	–	–	–
	2. 유압계		○	○	○	○	○	○	–	○	–
	3. 압축시험기		○	○	○	○	○	○	–	–	–
	4. 제동시험기	15톤 이상	○	–	–	–	○	–	–	–	–
	5. 분사펌프시험기 또는 전자제어 엔진진단기		○	○	○	○	○	–	–	–	–
	6. 노즐시험기		○	○	○	○	○	–	○	–	–
	7. 정반		○	○	○	○	–	○	○	○	–
	8. 매연농도측정기	0~100% 측정용 또는 광투과식	○	○	○	○	○	–	–	–	–
	9. 속도계시험기	15톤 이상 120㎞/h 이상	○	–	–	–	○	–	–	–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11. 조속기봉인기		○	○	○	○	○	–	–	–	–
	12. 절연테스터기		–	–	–	–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	–	–	○
	15. 전기테스터기		–	–	–	–	–	–	–	–	○
공구	1. 밸브시트커터		○	○	○	○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	○	–	–
	3.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	○	○	○	○	○	○	○	○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 4. 버어니어캘리퍼스		–	–	–	–	–	–	–	–	○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	–	–	–	–	–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